

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의원

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,

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의원입니다.

오늘 여러 위원님에게 「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,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서울시는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일자리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, 민·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,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자문 역할을 하는 ‘일자리위원회’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.

그런데 이 위원회의 조례상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

정해져 있는바,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 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

또한 최근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이 폐지됨에 따라, 관련 조항의 정비 또한 역시 필요하게 되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!